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2년 11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감리절차 선진화 및 감사품질 제고

세무 및 법률정보

-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공포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감리절차 선진화 및 감사품질 제고

[출처: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2022. 9. 29]

주요내용

◆(배경)「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회계감리 절차, 감사인 감독 및 지정제도 개선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함

◆주요 내용

- ①(감리조사기한 명문화)감리·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하며
-조사기한이 연장되면 지체없이 회사·감사인에게 통지합니다.
 - ②(문답서 조기 열람 및 복사 허용)피조사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피조사자 본인의 문답서 열람·복사를 허용합니다.
 - ③(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방식 구체화)23개 계량지표는 매년 평가하고, 11개 비계량지표는 감사인 감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합니다.
 - ④(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점검방식 구체화)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서식에 따라 점검한 결과 및 근거자료를 8년간 보관토록 하였고
-위반에 따른 시정권고 조치 시 이행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 ⑤(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 후속조치) 감사인 군 분류 개편 등 지정 방식 개선에 따른 신고서식을 마련하였습니다.
- ◆(시행일) '22.9.29.(다만 ①의 경우 '22.5.31. 이후 감리 착수 건부터 적용)

개요

I 개요

□금융감독원은 외감규정 개정*에 따라 회계감리 절차, 감사인 감독 및 지정제도 개선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 '22.5.3. 및 '22.9.29.
 ◦'22.7.8.~8.17. 및 '22.9.2.~9.22. 사전 예고 과정에서 외부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의견 중 합리적인 사항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II 주요 개정내용

1. 감리절차 개선 관련

가.감리조사기한 명문화

□ '감리·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합니다.

- 조사기한이 연장되면 지체없이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합니다.
 * 회사·감사인에게 발송하는 감리착수공문에 감리·조사기간을 기재하며,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심사·감리를 중단한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
- 본 규정은 감리선진화 방안 증권선물위원회 보고일('22.5.31.) 이후 착수하는 감리 건부터 적용합니다.

나. 피조사자 문답서 열람시기 개선 및 복사 허용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사전통지 前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피조사자 본인의 문답서 열람·복사를 허용합니다.

2. 감사인 감독제도 관련

가.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 등 구체화
 ◦ 평가지표별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계량지표는 매년, 비계량지표는 감사인 감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평가합니다.

* [별표 5]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붙임 참조)

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관련 세부사항 신설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서식*에 따라 점검한 결과 및 근거자료를 8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별지 제37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점검보고서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감사인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별지 제38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사항 개선계획 보고서

** [별지 제39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권고사항 이행보고서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이행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별지 제40호]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이행결과 보고서

3.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가. 등록·일반 회계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신고서 서식 변경·신설
 ◦ 외감규정 개정으로 등록 회계법인*에만 감사인군(群)이 적용됨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고, 일반 회계법인**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 등록 회계법인 : 주권상장법인 감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품질관리 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회계법인

** 일반 회계법인 : 등록 회계법인이 아닌 회계법인

나. 사실상 감사불능회사의 외부감사 면제 신청 절차 마련
 ◦ 감사인 미선임을 사유로 지정된 회사가 연락두절·폐업간주 등으로 감사불능인 경우 지정 감사인 신청으로 외부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서식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계획

Ⅲ. 향후 계획

□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22.9.29.부터 시행됩니다.
◦ 다만, 감리·조사기간 제한 규정은 '22.5.31. 이후 착수하는 감리 건부터 적용합니다.

□ 제도 변경의 효과가 현장에서 적절히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내용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하여 기업 및 감사인에게 안내할 예정

☞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내용 확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금융감독법규정보 → 현행법규 → 금융투자관련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붙임]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도

붙임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1. 개 요

新「외부감사법」에서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도입

◦ 금융감독원은 한국회계학회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을 가능할 수 있는 평가기준* 마련

* 계량지표 23 개(총 65 점), 비계량지표 11 개(총 35 점)로 구성

◦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를 감사인 감리대상 선정 등 **회계감독에 활용**함으로써 **감사인이 스스로 품질관리수준을 제고**하도록 유도

2.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운영방안

(평가대상)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22.9 월말 40社)

(평가기준)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은 감리집행기관이 정하고**, 평가기준 제.개정시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정

(제출기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매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품질관리수준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평가실시) 품질관리 수준평가 중 **계량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비계량평가는 감사인감리** 등을 통하여 실시

(결과보고) 금융감독원은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 매년 수행한 계량평가 및 감사인감리 등을 통해 실시한 비계량평가 결과

(결과활용) **감사인 지정시 인센티브 부여, 감사인감리 대상 선정, 중점감리항목 선정, 회계법인 취약 분야 파악** 등에 활용

3.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은 **계량지표 23 개(총 65 점)와 비계량지표 11 개(총 35 점)**로 구성되어 있음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계량	비계량
<역량지표>			
1.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1-①품질관리 전담인력 비중	V	-
	1-②품질관리 전담인력의 업무부담	V	-
	1-③품질지향 내부문화를 위한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	V
2.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2-①독립성 담당인력 비중	V	-
	2-②독립성 위반	V	-
	2-③윤리기준 위반	V	-
	2-④독립성·윤리기준 점검 시스템 설계 및 운영	-	V
3.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3-①위험평가 사전검토 비율	V	-
	3-②회계감사업무 매출액 비중	V	-
	3-③사전위험평가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	V
4. 인적자원	4-①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교육훈련	V	-
	4-②감사인력 유지율	V	-
	4-③소속 공인회계사의 업무부담	V	-
	4-④인적자원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	V
	4-⑤업무시간 관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	V
5. 업무의 수행	5-①업무수행이사의 입증감사전 투입시간	V	-
	5-②사전심리시간	V	-
	5-③사전심리 담당자의 입증감사전 투입시간	V	-
	5-④전문가 활용	V	-
	5-⑤지시, 감독, 검토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	V
	5-⑥사전심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	V
	5-⑦감사조서 관리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	V
6. 모니터링	6-①사후심리시간	V	-
	6-②전체 감사대상회사 대비 사후심리비율	V	-
	6-③사후심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상태지표>			
7. 감리결과 등	7-①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등 심사·감리결과	V	-
	7-②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 심사·감리결과	V	-
	7-③재무제표 재작성 등 빈도	V	-
	7-④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V	-
	7-⑤개별감사업무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V	-
	7-⑥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지적사항 발생원인	-	V
	7-⑦개별감사업무에 대한감사인 감리결과 지적사항 발생원인	-	V
<동태지표>			
8. 감사품질 개선정도	8-①개선권고사항 이행 소홀 및 미이행	V	-
	8-②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및 개선정도	V	-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공포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공포

□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영세율 적용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10.19일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22.10.27일 공포되었습니다.

□ 금번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 영세율(비과세)이 적용됩니다.

- 이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한시적 조치로, '22.10.17일부터 '22.12.31일까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법인세법 §98② 및 소득세법 §156②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금융시장 불안 등에 긴급한 대응을 위해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시행령으로 탄력세율(세율인하 또는 영의 세율)을 적용 가능

○ 금번 조치로 외국인의 국채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채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가 기대되고,

○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등재('22.9.29일)로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참고 :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영세율 적용 관련 사항

1. 영세율 적용 이유 및 기대효과

□ (추진이유) 국채 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 필요

□ (기대효과)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입에 따른 국채 금리 하락 등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 기대

○ 이자소득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 기대수익 증가*로 외국인의 국채 신규 취득 및 기존 보유 외국인의 보유 지속 유인이 있음

*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 세후수익률 상승으로 투자수요 증대

2. 영세율 적용 시점

영세율은 '22.10.17일부터 '22.12.31일까지 국채등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

3.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과세 현황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통해 분리과세 중

○ (이자소득) 조세조약에 따라 채권 이자에 대해 대체로 5~12%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 조세조약 미체결국은 14%(지방세 포함시 15.4%) 세율로 원천징수

○ (양도소득) 조세조약에 따라 대부분 면세되나, 예외적으로 4개국(홍콩, 룩셈부르크, 호주, 브라질) 법인 또는 거주자에 대해서 과세*

*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4. 내년 이후 비과세 적용 여부

내년 이후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해 이자·양도소득 비과세하는 규정은 소득·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22.9.2일 소득·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납부기한*은 2022. 11. 30.(수)까지입니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1월 30일까지 납부

(1) 중간예납 대상자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0만 명입니다.

○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 연장자를 제외한 131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는 2022. 11. 30.(수)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2022. 6. 30.이전 휴·폐업한 사업자 등

(2) 중간예납 세액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 기준액)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2023년 5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23년 6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1/2
$* \text{중간예납기준액} = \text{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text{확정신고 납부세액} + \text{결정·수정신고 등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 \text{환급세액}$	

(3) 중간예납 분납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3. 1. 31.(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

(4) 납부기한 직권연장

○ 국세청은 코로나19 및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대상자(2022년 1분기),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 9만 3천 명(2,793억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023. 2. 28.)합니다.

구분	구분	지원대상
1	손실보전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영업손실(2022년 1분기)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 · 다만,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2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힌남노’)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납세자 * (경북)포항·경주시, (울산)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시 옥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5)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상반기(2022. 1. 1.~ 6. 30.)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2022. 11. 30.(수)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귀속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함(납부기한 직권 연장자 포함)

※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동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1-법규재산-1315, 2022.10.19.)

(사실관계)

- 2014.01.24. (주)□□□의 등기이사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사내이사 재직중
- 2015.12월 (주)□□□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 0,000주(①) 취득
- 2017.09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000주(②) 취득
- 2017.10월 무상증자로 0,000주(③) 배정받음
- 2019.01월 스톡옵션행사로 00,000주(④) 취득
- 2021.04.28. (주)□□□ 코스닥시장에 상장, 본인은 상장일 현재 00,000주 (=①+②+③+④) 보유함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등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수 확인
 - (질의1) 특수관계인인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근거하여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 (질의2)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7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 그 신주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신주가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신주를 취득한 자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무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신주로서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는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을 적용하는 것임.

한편,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청년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자가 경력단절 여성으로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법규소독 2021-5836, 2022.11.09.)

(사실관계)

- 질의인은 '17.1.2. 조세특례제한법§30①의 중소기업체(이하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A에 취업한 후 '18.2.28. 결혼('18.5월)을 사유로 퇴직한 자로서,
-'21.10월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 B에 취업함

(질의내용)

- "청년"의 자격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후에 다시 "경력단절 여성"의 자격으로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업 무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